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1. 29 선고 2021가단23912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틀 담당변호사 송기영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재협

변 론 종 결 2022. 11. 15.

판 결 선 고 2022. 11. 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6. 11. 29. 접수 제6574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원고들은 D이 원고들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은 2012. 11. 5.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13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까지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이에 기하여 실제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날은 4년이 지난 2016. 11. 29.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은 2012. 11. 5.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288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50875 판결 참조)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일수

별지